

2015. 7.

바른 감사 바른 시청

본청 특정감사 결과 (일상경비 등 3개분야 실시)



감사담당관실

<http://www.jeonju.go.kr>

본청 특정감사 결과 보고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4. 13. ~ 4. 24. (10일간)
- 감사범위 : '13. 1월 ~ '15. 2월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 외 2개반 10명

□ 감사분야(3개분야)

- 일상경비 집행분야
- 소규모 공사·용역 분야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 감사중점사항

- 일상경비 집행 분야
 - 예산집행 절차와 기준, 집행 적정성 여부
 - 업무추진비 집행의 근거 및 원칙, 신용카드 등 사용절차 준수
 - 기타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공사·용역 분야
 - 행정절차 이행 및 적법성, 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 과다설계 및 설계변경 적정, 부실공사 등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분야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물 품질관리자 배치 적정성

□ 감사결과 : 45건 지적

구 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계획(천원)				신 분 상 심의결과(명)		
	계	시정	주의	계	감액	회수	기타	계	훈계	징계
본 청	45	△△	△△	00,000	△△,△△△	□□□□	△△△	◇	◇	-

주요 지적사항

1. 사무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집행하는 예산임.
- 그런데, ○○○○○과에서는 2013. 1. 31.~ 2013. 3. 26. 기간 동안 유관 기관·단체 및 시설 등의 준공·기공·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3건, 000,000원 상당의 화환을 구입·전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규정에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음.

2. 우편 후납료 납부에 관한 사항

- 가산금은 공공요금 등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행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으로, 기간 내에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임.
- 그런데 ○○○○○에서는 2013. 9.27일 후납 우편료를 납부하면서, 납부기한 경과 후에 우편료를 납부함에 따라 가산금 17,59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음.

3. 지역개발공채 매입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에 의하면 100만원이상의 각종 계약 체결시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은 대금청구액의 1.5/100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2014.10.30.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리막 세정에 따른 용역계약 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 000,000원을 계약업체로부터 징구하지 않았으며, 관광산업과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 ㉠㉠㉠㉠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규정 및 발전전략 수립 등에 관한 자료번역 용역계약 등 3건에 대하여 총 70,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징구하지 않았고,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2014. 00.00. △△△△△ 보고회용 PPT 제작 구입(0,000천원)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 00,000원을 계약업체로부터 징구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4.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에 관한 사항

- 「청원경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제9조(복제)에 따라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정기지급일(하복 5. 5 / 동복 9. 25)에 현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복에는 정해진 위치에 부속물(가슴표장, 어깨휘장, 계급장)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그런데, ◇◇◇◇◇◇과에서는 청원경찰 근무복을 구입하면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년에는 하복을 지급하지 않고 2013. 11. 22. 동복으로 한 벌당 00만원 상당의 기성품 ◎별을 구입하여 연1회만 지급하였고, 2013. 00.00.~ 2014.00.00. 기간 동안 세 차례 근무복을 구입·지급하면서 관련 규정에 명시된 부속물(가슴표장, 어깨휘장 등)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기성품을 납품받아 지급하였음.

☞ 행정상조치 : 주 의

5. 급량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지침에 따라 급량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

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 행사지원 인력(공무원 등으로 한정)에 대해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과에서는 2013년과 2014년도 ‘㉠㉠㉠㉠ 자연 학교’를 운영하면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행사지원 공무원과 행사진행요원들의 급식비(중식) 0,000천원을 예산편성 목적 및 경비의 집행성격에 맞게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행정상조치 : 주 의

6. 사무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가. 피복 구입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 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과에서는 2014.00.00일 업무성격상 제복 착용의 필요성이 없는 △△△△회관 근무자들에게 작업복으로 000,000원 상당의 점퍼 0벌을 0,000,000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2014. 00.00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음.

나. 신문구독료 지급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과에서는 2014년 4/4분기 신문구독료 000,000원을 2015년도 세출예산으로 2015. 0. 00일에 집행한 사실이 있음.

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임.
- 그런데 ○○○에서는 당면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에 대한 격려로 0건 000천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에서는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직원격려 및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간식비 등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시책업무추진비로 0건 00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에서는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에 대한 격려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0건 000천원을 집행하였음.

8. 관외출장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출장여비 지급 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1/2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관외출장여비 지급 시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자들에 대해 일비를 1/2로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여 총 00,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9. 강사수당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에 따라 전문강사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관광산업과에서는 201○년 ▼▼▼▼ ▼▼▼▼▼사업 초청강연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소득세 00,000원, 주민세 0,000원)를 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였음.

10.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수당의 지급)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을 보면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1◇년부터 201◇년 현재까지 도시계획 위원회를 총 00회 개최하면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00,000천원을 집행하였는데, 관련 조례 및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속기사에게 지급할 수 있음에도, 전주시 ▣▣▣▣▣ 소속 공무원(속기사)인 ○○○에게 현재까지 총 00회 0,000천원의 참석수당을 집행하였음.

11.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 절차는 먼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해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0건 000천원을 지출원인행위(카드결제)를 한 후에 예산집행품의를 하는 등 신용카드 회계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에서는 2014. 0월부터 2014. 00월까지 업무추진비 등 0건 0,000천원을 예산집행품의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에서는 2014. 0. 0.부터 2014. 00.00.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0건 000천원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출을 한 후에 예산집행품의를 하였음.

- ■■■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에 대한 품의를 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 2013.00.0.부터 2014.0.00.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0건 000천원을 집행하면서 신용카드로 지출을 한 후 예산집행품의 하였으며, ■■■■■에서는 사무관리비를 집행하면서 사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에 대한 품의를 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하는데, 2014. 00.00. ~ 00.00. △△△ △△△△ 관련 버스 및 세미나실 임차료 0,000천원에 대하여 예산집행품의를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난 00. 0. 예산집행품의를 한 사실이 있음.

12. 행사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지침에 의하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희망복지 SOS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복지분야별 수범사례 선진지 방문을 위한 벤치마킹 경비로 ●●●●● 직원들에게 출장여비 등 금0,000천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에서는 2014.00.00.~ 00.00. 기간 동안 ■■■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행사 참석자들에게 급식비 단가(1인 1식 7,000원)를 초과, 1인 1식당 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참석자 00명에게 0식을 제공하고 금0,000천원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여 금000천원을 과다 집행하였음.

13. 급량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사업자(식당)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 ㉠㉡㉢㉣㉤에서는 급량비를 집행하면서 2014. 0월부터 00월 까지 일정기간(1개월미만) 동안의 특근 매식비를 1건으로 합산하여 결재하면서 총 0회 0,000천원을 현금영수증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재하였으며, ㉥㉦㉧㉨㉩에서는 2014. 0월부터 0월까지 일정기간 (1개월미만) 동안의 특근 매식비를 1건으로 합산하여 결재하면서 총 0회 000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음.

14. 신용카드 발급대장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 외 7개 부서에서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관리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교체될 때마다 변경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외 0개 부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매월 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 ㉾㉿㊀㊁㊂㊃㊄ 외 00개 부서에서는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㊅㊆㊇㊈㊉ 등 0개 부서에서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대장(수기)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5.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승인절차 미이행 및 품질관리업무 관련

- ㊊㊋㊌㊍㊎ 건립공사 등 0개 현장이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품질시

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품질시험계획서는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의 승인절차 없이 시공 중에 있음.

- 또한, 품질관리 시험실의 설치 규정은 해당 등급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험실 면적을 설계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시험실 면적을 계상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업무에 소홀히 함.

16. 레미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³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슬럼프 시험 등 품질시험을 하여야 함.
- 그런데 ◇◇◇◇◇에서 2013.00.00.부터 2014.00.00.까지 덕진구 ㉠ ㉠동 1가 000-0번지 부근 배수로 정비공사 등 00개 현장에 총 000회의 레미콘을 타설하였으나, 00회만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나머지 000회는 미실시 하였고, ●●●●●에서는 2014.00.00.부터 2015.00.00.까지 상습침수지역(금상동)개설사업 현장에서 총 00회의 레미콘을 타설하였으나, 0회만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나머지 00회는 미실시 하였음.

17. 사토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 덕진구 ㉠㉠동3가 000-0번지 부근 등 0개소 배수로정비공사는 당초 설계서 작성시 사토처리장이 확정되지 않아 사토운반은 L=3.0km로 반영하였으나 사토량이 운반되지 않았고(L=0.0km) 현장내 사토처리 하였음에도 설계변경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000,000원 정도가 과다 집행되었으며,
- 완산구 ◇◇동 000-0번지 부근 등 0개소 배수로정비공사는 당초 설계서 작성시 사토처리장이 확정되지 않아 사토운반은 L=3.0km로 반영하였으나 실제로 0.0km지점에 운반 사토처리 하였음에도 설계변경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000,000원 정도가 과다 집행되었음.

- 덕진구 ▼▼0동  뒤편 등 0개소 농로포장공사는 당초 설계서 작성시 사토처리장이 확정되지 않아 사토운반은 L=3.0km로 반영하였으나 실제로 0.0km지점에 운반 사토처리 하였음에도 설계변경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000,000원 정도가 과다 집행되었으며,
- 덕진구 ◆◆동  부근 등 0개소 농로포장공사는 당초 설계서 작성시 사토처리장이 확정되지 않아 사토운반은 L=3.0km로 반영하였으나 실제로 0.0km지점에 운반 사토처리 하였음에도 설계변경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000,000원 정도가 과다 집행되었음.
- 덕진구 ▲▲동  노후저수지 보수·보강공사는 당초 설계서 작성시 사토처리장이 확정되지 않아 사토운반은 L=2.0km로 반영하였으나 사토량이 운반되지 않았고(L=0.0km) 현장내 사토처리 하였음에도 설계변경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000,000원 정도가 과다 집행되었음.

18.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에서는 2014년도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은벽 구조물을 설치함에 있어 잡석을 부설하고 다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부설 및 다짐을 실시하지 않았고, 녹지경계석 A,B,C는 녹지경계석을 거치하고 경계석 이탈 방지 보호콘크리트(경계석 양측)를 거푸집(2면)을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거푸집 1면만 설치하고 1면은 미시공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있는데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함으로서 000,000원 과다 집행하였으며,
- 또한 2013년도 도시림(●●●, 2차)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지경계석(곡선)은 녹지경계석을 거치하고 경계석 이탈 방지 보호콘크리트(경계석 양측)를 거푸집(2면, 1m당 0.3㎡)을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거푸집 1면(1m당 0.00㎡)만 설치 하고 1면은 미시공(1m당 0.00㎡)하였고, 평의자 설치할 경우 기초 거푸집(1개소당 0.2㎡)을 설치 후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거푸집 미시공(00개소, 2㎡)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후 설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있는데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서

000,000원 과다 집행한 사실 있음.

19. 농로포장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 ■■■■■■■■에서는 송천동 ▲▲▲ 아래 등 0개소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농로 포장 양쪽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포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포장할 구간 한쪽면에 수로관이 설치되어 있어 L=36m은 한쪽면만 거푸집을 설치 하였고, 암거 설치시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을 미설치 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있는데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서 000,000원 과다 집행되었으며,
- ■■동 ◆◆마을 농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포장면 양쪽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포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포장할 구간 한쪽면에 수로관이 설치되어 있어 한쪽면만 거푸집을 설치 포장을 하였는데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서 000,000원 과다 집행되었음.
- 또한 ◎◎0동 모정~■■공원 등 0개소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농로 포장 양쪽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포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포장할 구간 한쪽면에 수로관(L=33m)이 설치되어 있어 수로관 부분은 제외하고 한쪽면만 거푸집을 설치하여 포장을 하였는데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써 000,000원 과다 집행되었음.

20.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 ◆◆◆◆◆에서는 □□0동 ▼▼마을 내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로관(1200×1000) 부설하는데 저판 밑에 모래(28㎥)를 부설하도록 설계 되었으나, 모래부설 없이 설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있는데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서 000,000원 과다 지급되었으며,
- ▲▲동 000번지 등 0개소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로관 부설하는데 저판 밑에 모래(5.4㎥)를 부설하도록 설계 되었으나, 모래부설없이 설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있는데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서 000,000원 과다 지급되었음.
- 또한 ■■동0가 ○○리~○○○간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집

수정 1조를 레미콘으로 현장 타설하여 설치하도록 되었으나, 현장에서 임의로 기성품을 구입 설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있는데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서 000,000원 과다 지급되었으며,

- 또한 ■■■동 산00번지 부근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암거설치함에 있어 강관 비계 설치한 후 시공토록 되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암거 상판에 교면방수가 불필요함에도 설계에 반영 되었고 현장 확인한 결과 방수 미시공하여 다르게 시공하였는데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서 000,000원 과다 지급되었음.

21. 실시설계용역 추진 관련

- ◆◆◆◆◆에서는『■■■■■ CCTV구축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개 용역에 대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용역비를 산출하면서 직접경비와 용역업무범위에 포함된 인쇄비 000천원을 중복·과다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함

22. 2014년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추진 관련

- ◆◆◆◆◆에서는 2014년도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호수 느티나무(◎◎◎◎ 000-10)주변에 화강암 경계석(200×300×1000) 설치와 노거수 팽나무(덕진구 ●●● 000-7)주변에 화강암경계석(200×300×1000) 설치에서 경계석을 거치하고 경계석 이탈 방지 보호콘크리트(경계석 양측)를 거푸집(2면)을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 거푸집을 미설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인데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서 000,000원 과다 집행되었음.

23. ■■■■■ 인테리어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 ■■■■■ 5층 인테리어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발주 금액이 금000,000천원이므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사업인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산업안전관리비 및 스노우스토퍼 설치가 과다계상 되었으나 설계변경 감액(금00,000천원 정도) 조치를 취하

지 않았고,

- 기존 경량철골천정틀 및 석고보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5층 전통 카페 천정 전체에 대해 경량철골천정틀과 석고보드를 철거후 신설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공사(금00,000천원)를 시행함.
- 또한 시설물유지관리 전문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0억을 초과하였으므로 품질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나 미계상 하였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 및 승인하지 않음.

24. 도시재생 거점센터 건립공사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3호) 제34조(품질시험기준) 별표1 규정에 의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일부 재료에 대해 시험횟수 부족 및 누락 작성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25. 공사설계 단가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예정가격의 결정시 재료비의 단가는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나,
- 송천동 ●●시장 ▲▲▲ 옥상기계실 바닥 및 기타 보수공사 외 0건을 시행하면서 설계도면 또는 재료비 단가조사 실시하지 않음.

26. 공사설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공사설계서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발주 의뢰부서는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도면에 의거 공종별 소요물량내역서 및 단가산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시설물 도장공사 외 1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에 대한 작성없이 공사시행 함.

27. ■■■■ ■■■■■■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 ■■■■■■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면서 바닥 시멘트 액체방수1종 87㎡가 공사내역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지수판설치만으로 지하층 누수에 대한 보강공사가 가능함에 따라 시멘트 액체방수 공종을 제외하였으면 이에 대한 공사금액 금 0,000천원 정도를 설계변경 하여 감액조치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지급 하였음.

28. 단가계약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 ◇◇◇ 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단가계약을 추진하면서 당초 단가계약 되지 않은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전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 ◇◇◇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단가계약체결하지 않은 HI박스 설치 외 0개 신규품목(2013년도), LED평판 50W설치외 0개 신규품목(2014년도)이 발생하였으면 작업 지시전 설계변경을 하거나, 실정보고를 통한 우선승인 후 설계변경 계약 체결하여 정산 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하였음.

29. 중앙상가 지하층 시설 개·보수 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 강화유리도어 형태를 수동문에서 자동문으로 변경하면서 신규품목이므로 조사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금액조정하지 않고 조사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여 공사비 금0,000천원 정도의 금액을 과다 지급하였음.

30. ■■■■ ㉠㉠시장 원협 화장실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 전주시 ■■■■ ㉠㉠시장 원협 화장실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바닥 타일까내기 28.4㎡와 시멘트 액체방수 41.6㎡ 물량이 공사내역서

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었으면 이에 대한 공사금액 금 0,000천원 정도를 설계변경 하여 감액조치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 지급함

31.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사항

- 2014년 5월에서 7월까지 0회에 걸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지붕교체” 공정 설계 시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기존 철거대상 지붕 00개소에 대해서는 고재처리비용을 산정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 자체 설계 시 사용고재처리 비용을 누락하였다면 지붕교체 시 발생된 당초 유개승강장 지붕에 대하여 고재처리비용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지붕 고재 0,000.00kg을 정산변경 없이 준공처리하여 0,000,0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32.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사항

-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정폐기물(석면) 해체 및 철거를 위하여 건물 외부에 비계를 설치토록 계획하고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상기 용역의 도급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석면 해체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용역 준공 전 비계 설치비용을 정산 변경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준공처리 하여 0,000,0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33. ○○○ 공영주차장 포장공사에 관한 사항

- “○○○ 공영주차장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에 계상된 배수관 되메우기(다짐) 42m³,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합판 거푸집 36m²의 미시공분에 대해 정산변경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관리비 정산 시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하여 0,000,0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34. 서부신시가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 “서부신시가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무인단속 시스템 전원 연결을 위해 전선관(30mm) 50m, 투스콘 커팅 44m, 투스콘 파쇄포장 20m²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 실제로는 전선관 00m, 투스콘 커팅 00m, 투스콘 파쇄포장 00m²를 미시공 하였으므로 준공 전 설계변경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하여 0,000,0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도로점용공사가 완료되면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완료 확인 신청하여 도로관리부서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여야 하나, 완료확인 신청을 하지 않았음.

35.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외 0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 0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안전시설 중 공사안내 표지판, 차량유도시설, 현장 경계휀스”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항목임에도,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그대로 인정하여 계약금액 조정 없이 준공처리하여 “◇◇◇ 어린이집 외 0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000,000원, “새봄유치원 외 0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000,000원 “꿈사랑어린이집외 0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0,000,000원 총 0,000,0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36. ○○○○○ 쉼고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 “○○○○○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도급자가 준공계 제출시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총 0,000,0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37. 자전거보관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에 관한 사항

- “전주시 관내 자전거도로 안전 표지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로 등 00개 노선에 대해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000개소를 설치 계획하여 착공하였으나, 실제 당초 계약한 구간에서 잉여수량이 발생하자 4개 노선에 00개소를 별도로 설치하였음. 당초 설계 위치와 시공 설치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소관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야 하나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설치 수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 또한 “전주시 관내 자전거 보관대 교체 및 설치공사”공사를 추진하면서 자전거 보관대 콘크리트 기초 합판거푸집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산변경 없이 준공처리하여 0,000,0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38. 서신동 ■■■~●●아파트 사거리 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서신동 ■■■~●●아파트 사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사업”을 L형측구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하였고, 산업안전관리비 불가항목인 안전 시설(칼라콘)에 대해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하여 총 0,000,0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39. 팔복동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2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에 반영된 경계석 설치공 거푸집(합판) 수량($A=97.1m^2$)을 확인 결과 현지여건상 거푸집 설치가 불필요한 구간(아스콘 절단면: $L=254m$, 옹벽: $L=3m$, $A=51.1m^2$)도 계상하여 시공비 0,000,000원 (제경비 포함)을 과다설계한 사실이 있음.

40. ㉠㉠㉠ 외 0개 생태호소 환경정비(잡초제거) 사업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제2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에 반

영된 인력작기($A=0,000\text{m}^2$)중 ㉠㉠㉠($A=0,000\text{m}^2$)를 제외한 0개 생태 호소($A=0,000\text{m}^2$)는 인력작기가 아닌 기계작기로 사업을 완료하였는데도 인력작기로 반영하여 시공비 0,000,0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41. □□□□□□ 앞 쉼터조성공사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제2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인도포장공사에 따른 경계석 시공시($L=83\text{m}$) 설계에 반영된 거푸집(수량: $A=28.66\text{m}^2$)을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함에도 준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 거푸집(수량: $A=00.26\text{m}^2$)을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거푸집 시공비 000,000원을 설계변경 하여 감액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에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안전관리비 00,000원(제경비 포함)을 정산감액하지 않는 등 총 000,000원을 설계변경 또는 정산감액 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42. 대형폐기물 선별장 앞 콘크리트 포장 공사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제2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에 반영된 콘크리트 포장공사 PE비닐깔기를 시공해야 함에도 준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PE비닐깔기를 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시공비 000,000원(재료비 포함)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지 않고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에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안전관리비 0,000,000원 (제경비 포함)을 정산감액하지 않는 등 총 0,000,000원을 설계변경 또는 정산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43. **평화0동 용수확보사업 환경보전비에 관한 사항**

- 평화0동  용수확보사업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비 정산대상으로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이 미제출 되었음에도,
- 공사에 대한 환경보전비 000,000원(제경비 포함)을 정산감액 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44. **◆◆마을 온수배관 0차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6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총공사금액이 00,000천원(관급자재 포함) 인데도 불구하고 원가계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 또한 공사차량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인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라바콘, 현장경계웬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을 정산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45. **♣♣♣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6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총공사금액이 00,000천원 임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 또한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인 외부인 출입금지·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와 공사차량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인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라바콘, 현장경계웬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을 정산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